##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48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이원택・임미애・이춘석

임호선 · 송기헌 · 이수진

전용기 · 송옥주 · 이병진

최민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에는 손실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 내용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하였음.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와 어가 하락의 인과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의 경우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 로 구성되어 있어 보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5조 및 제8조).

#### 법률 제 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

제8조제1항 중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를 "종묘폐기비용, 시설 철거비 및 어류매각 손실액(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2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u>17명</u>
로 구성한다.	·.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	③
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	
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
	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의 전문가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제8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	
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u>종</u>	<u>중</u>
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	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및 어
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	류매각 손실액(양식수산물의
다.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

	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말
	<u>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